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50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오세희 · 김병주 · 이훈기
박희승 · 전진숙 · 김태선
박균택 · 김남희 · 위성곤
윤종균 · 김우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력난, 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함.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 제조혁신임.

그러나 국내 중소 제조 현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19.5%에 불과하며, 도입 기업의 75.5%가 기초 수준에 머물러 고도화가 정체되어 있음. 특히, AI 도입 기업은 0.1% 수준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과 전문인력 기반이 극히 취약한 실정임.

이러한 낮은 도입률, 기술 고도화 정체, 인프라 및 전문인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개별 정책으로는 디지털 전환(DX)에서 인공지능 전환(AX)으로의 도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에너지 효율 및 안전 등 지속가능성(ESG)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스마트

제조업의 확산은 필수적인 사항임.

이에 본 법안은 국가 차원의 종합 기본계획 수립, 핵심 기술 지정, 전문기업 육성,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을 총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품질, 안전,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마트제조기술을 적용하여 제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스마트제조기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심 스마트제조기술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제조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장비·소프트웨어 등을 개발·공급하는 기

업을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스마트제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19조).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1조).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제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산업구조의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제조산업”이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하여 제품의 기획, 제조, 유통 등 생산과정 전반을 자동화·지능화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제조기술”이란 스마트제조산업에 필요한 전문 또는 융합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이란 스마트제조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스마트제조데이터”란 제품의 기획·설계·제조·유통, 물류 및 품질 관리, 마케팅 등의 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기업이 생산, 보유, 활용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제

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스마트제조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 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을 포함하는 경우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스마트제조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제조산업 및 스마트제조기술의 현황 및 발전 전략
2. 스마트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제조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6. 스마트제조산업과 지역 산업의 연계 발전에 관한 사항
7. 스마트제조산업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심의 및 제6조에 따른 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 ①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방향 및 주요 과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보급·확산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스마트제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마트제조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스마트제조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

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의 대상,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스마트제조산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스마트제조산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정책 수립 지원
2.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3.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지원
4. 제11조에 따른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 지원 및 관리
5.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활용 기반 조성
6.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2년마다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⑥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성과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스마트제조산업 지원 및 기반 조성

제9조(스마트제조기술 개발 등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 제조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제조기술의 기술 수준 향상 및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
2. 스마트제조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를 위한 시설·장비 등의 지원
3. 스마트제조기술의 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스마트제조데이터의 보안 및 활용 지원
5. 스마트제조기술 관련 산학협력 기반의 연구·조사 지원
6. 그 밖에 스마트제조기술 개발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스마트제조기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진단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의 지정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스마트제조기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심 스마트제조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스마트제조기술을 지정대상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의 연구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제조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장비·소프트웨어 등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을 스마트제조

산업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일 것
2. 총매출액 중 스마트제조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3. 스마트제조기술의 상용화 및 사업화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4. 스마트제조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기술에 특화된 기업일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일 것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기술 전문가와 업종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지원
2. 창업 및 성장을 위한 금융, 세제, 투자유치 지원
3.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 지원
4.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 2년마다 전문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그 밖에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지원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기술 도입 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기술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설비 및 관련 기기 설치
2. 스마트제조데이터 확보 및 활용 체계 구축
3. 스마트제조기술의 적용 및 고도화
4. 스마트제조기술 도입을 위한 현장 인력 교육
5. 전담기관 및 전문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은 제공된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의 지식재산권 관리, 스마트제조데이터의 보안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스마트제조기술 실증기반 구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업이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 및 성능평가 등을 위하여 시험·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하 “실증기반”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업 및 관련 중소기업의 시험·평가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기반을 해당 기업에게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증기반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실증기반의 개방·활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스마트제조를 통한 지속 가능성 증진) ① 정부는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스마트제조시스템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지원
2. 스마트제조 관련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근로 환경 개선 지원
3. 제조공정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 지원

4. 지속 가능성에 관한 목표를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등 우대 지원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평가 등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모델 연구개발
2. 스마트제조데이터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 및 수요 조사
3. 스마트제조데이터 표준 관련 민관 공동 협의체 운영

제16조(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제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지원
2. 스마트제조데이터 생산·수집, 가공·분석 및 공유·유통 등의 촉진 지원
3. 스마트제조데이터 표준을 준수한 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판로확보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스마트제조데이터 보안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 제조데이터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제조데이터 보안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술의 개발
2. 스마트제조데이터 보안 진단 및 자문
3. 그 밖에 스마트제조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스마트제조데이터 권리관계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 ① 스마트 제조데이터의 소유권 및 이용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스마트제조데이터를 생산한 기업에 귀속하되, 공동 생산 또는 위탁의 경우에는 상

호 간 계약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스마트제조데이터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제조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스마트제조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스마트제조산업 전문인력의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스마트제조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3.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직무 표준 및 자격제도 마련
4. 스마트제조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 및 능력 개발 지원
5. 스마트제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6. 그 밖에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이나 채용 등에 필

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우수 기업 및 기관 선정·포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 및 기관의 선정 방법,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제협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기술·정보 및 인력 교류
2. 스마트제조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의 공동 연구개발 및 국제 표준화
3.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
4.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수출 또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및 보안 강화 등과 관련된 국제 협력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2조(금융 및 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제조산업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제조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책자금의 지원, 특례보증의 제공, 조세 감면 등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규제개선 연계) ①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스마트제조기술기업 등은 스마트제조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개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 제15조에 따른 표준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 제16조에 따른 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제17조에 따른 스마트제조데이터 보안 지원, 제1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 전문기업, 그 밖에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

다.

제27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2. 제1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업의 지정취소

제28조(스마트제조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수행되는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이하 “스마트제조산업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기업,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스마트제조산업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참여 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스마트제조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스마트제조산업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자료 및 사업 결과물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스마트제조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 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참여 제한 기간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사업비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 제28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하며,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이의신청) 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참여 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업이 아닌 자는 스마트제조산업 전담기관,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전담기관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 단체의 임직원

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을 받은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산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받은 정부의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2조를 위반하여 스마트제조산업 전담기관,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